Initial issue 2020.03.00

Doc No	KM-SM-R01				
Rev No	01				
Dept	시너지경영팀				

<u> 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<mark>(안)</mark></u>

본 내용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, 내용 점검 차원에서 공유 드리는 사항입니다. 향후 최종 확정 시 별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.

kakaomobility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kakao mobility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목차

제1장 총칙	4
제1조【목적】	4
제 2 조 【용어의 정의】	4
제 3 조 【적용대상】	5
제 4 조 【규정체계와 관리】	5
제 2 장 회계	5
제 5 조【회계기준】	5
제 6 조 【계정과목】	5
제 7 조 【증빙관리】	5
제 8 조 【결산】	5
제 9 조 【감독】	6
제 3 장 구매	6
제 10 조 【구매소요와 예산협의】	6
제 11 조 【구매주체】	6
제 12 조【입찰 및 비교견적 절차】	6
제 13 조 【구매계약의 체결】	
제 14 조 【검수와 대금지급요청】	7
제 4 장 재고자산	
제 15 조 【보관】	
제 16 조 【수불관리】	7
제 17 조 【재고자산 실사】	8
제 5 장 고정자산	
제 18 조 【자산관리와 취득】	8
제 19 조 【고정자산 실사】	8
제 20 조 【매각 또는 폐기】	
제 6 장 인사	
제 21 조 【채용】	
제 22 조 【근로계약】	9
제 23 조 【급여지급】	9
제 24 조 【복리후생】	9
제 25 조 【퇴직】	9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kakao mobility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제 26 조【징계】	9
제 26 조 【징계】	10
제 27 조 【예산계획의 수립】	10
제 28 조 【예산협의】	10
제 29 조 【예산집행】	10
제 8 장 자금관리	11
제 30 조 【자금관리주체】	11
제 31 조【지급수단】	11
제 32 조 【자금운용】	
제 9 장 법인카드	
제 33 조 【발급과 폐기】	
제 34 조 【법인카드사용】	
제 35 조 【부정사용 소명과 환수】	
제 10 장 법무	
제 36 조 【계약서 검토 및 체결】	
제 37 조 【법률검토 요청】	
제 38 조 【법무 조사】	
제 39 조【개인정보보호】	13
제 40 조 【소송 등 보고의무】	13
제 41 조 【법무관리 주체】	13
제 11 장 정 보보호	
제 42 조 【정보보호 관리】	13
제 43 조 【정보보호 운영】	13
제 12 장 윤리경영	
제 44 조 【부정청탁금지】	
제 45 조 【금품수수 등의 금지】	
제 13 장 규정의 위임	
제 46 조 【규정의 위임】	
부칙[병표 1] 자회사 언무수해 위인저격표	14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제1장 총칙

제1조 【목적】

본 규정은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(이하 '모회사'라 한다)의 종속회사 및 손자회사(이하 '자회사'라 한다)의 운영기준과 업무수행 원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갖는다.

제2조 [용어의 정의]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'자회사최고책임자'라 함은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위임전결 상 최상위의 직위를 갖는 자회사의 임직원을 말한다.
- 2. '사업팀'라 함은 자회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회사의 사업수행주관부서를 말한다.
- 3. '사업수행담당자'라 함은 모회사의 사업부문 소속으로써 자회사 운영사항 전반을 관리하는 담당자 및 그 파트장을 말한다.
- 4. '사업수행책임자'라 함은 모회사의 사업부문 소속으로써 자회사 운영사항 전반에 책임을 갖는 팀장을 말한다.
- 5. '사업수행최고책임자'라 함은 자회사 운영전반의 최종 전결권한을 갖는 모회사의 사업부문장을 말한다.
- 6. '규정관리부서'라 함은 본 규정 및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작성 및 변경과 관련한 사무운영의 주체로써 모회사 '시너지경영팀'을 말한다.
- 7. '규정책임부서'라 함은 본 규정에 포함된 각 장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된 제 규정을 관리하는 모회사의 부서를 말한다.

가. 회계: 재무팀

나. 구매: 경영지원팀

다. 재고자산: 경영지원팀

라. 고정자산: 회계처리-재무팀, 실물자산-경영지원팀

마. 인사: 피플부스터팀

바. 예산관리: 경영기획팀

사. 자금관리: 자금팀

아. 법인카드: 자금팀

자. 법무 및 개인정보: 법무팀

차. 정보보호: 정보보호팀

카. 윤리경영: 법무팀

- 8. 승인: 업무수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회사 임직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한,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라 수직적인 전결과정에 있는 상위 담당자 또는 책임자의 승낙이나 동의
- 9. 합의: 업무수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회사 임직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한,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라 유관부서 전결과정에 있는 유관부서 담당자 또는 책임자의 승낙이나 동의
- 10. 참조: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, 자회사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모회사 유관부서의 확인이나 검토
- 11. 협의: 필요한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간 이루어지는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르지 않은 구두 또는 서면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논의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제3조 【적용대상】

- ① 본 규정은 모회사에 종속된 모든 자회사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업무는 모회사의 내부적인 업무뿐만 아니라,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, 자회사의 내부적인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.

제4조 [규정체계와 관리]

- ① 본 규정은 자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수행방안 및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수행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- ② 별도의 지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본 규정을 관리하는 규정관리부서의 합의를 득해야 한다.
- ③ 본 규정을 일부 개정하거나 본 규정에서 위임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경우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
- 1. 규정책임부서장의 승인
- 2. 규정관리부서장의 합의
- 3. 사업수행최고책임자의 합의 (발의 주체가 사업팀일 경우 승인)
- 4. 모회사 대표이사의 승인

제2장 회계

제5조 【회계기준】

- ① 자회사의 회계업무 전반은 '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'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자회사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모든 행위는 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.

제6조 【계정과목】

- ①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모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정과목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신설, 수정, 삭제가 필요한 경우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7조 [증빙관리]

- ① 자회사에서는 회계업무처리와 관련한 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.
- ② 자회사에서는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관리하며, 해당 전자파일은 자산취득 및 비용처리 등회계기표 승인을 구하는 전자결재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.
- ③ 원본 보관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자회사 내의 지정된 장소를 정하여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서함에 보관해야 한다.

제8조 【결산】

- ① 회계결산은 연간, 반기간, 분기간, 월간 영업의 종료 시에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써 자회사의 영업결과를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.
- ② 자회사는 결산이 완료되면 회계장부를 마감해야 하며, 마감 이후에는 회계장부를 수정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정에 의해 마감 이후에 장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Rev. No: 01

Doc. No: KM-SM-R01

Rev. Date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완료한 후에 수행해야 한다.

③ 결산이 완료되면 자회사최고책임자는 모회사의 사업부 및 재무팀에 재무제표 및 결산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 【감독】

모회사는 자회사에서 수행한 회계처리 과정과 결과를 별도절차에 따라 감독할 수 있으며, 모회사 사업부의 관련 임직원과 자회사의 관련 임직원은 감독 절차에서 요구하는 인터뷰,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제3장 구매

제10조 [구매소요와 예산협의]

- ① 자회사에서 물품, 용역, 공사 등 각종 구매소요가 발생할 경우 자회사최고책임자는 모회사 사업수행담당자와 구매 필요성을 협의해야 한다.
- ② 구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'제7장 예산관리' 및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의 관련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【구매주체】

- ① 자회사는 구매절차 진행 등 구매업무 전반을 주관하여 수행하고, 그 과정에서 사업수행담당자 및 사업수행책임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산과 용역 및 금액적 중요성이 높은 구매 건의 경우 모회사 경영지원팀에서 공급업체 섭외, 공급업체 선정, 계약 등의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는 구매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【입찰 및 비교견적 절차】

- ① 자회사에서는 구매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급계약 또는 발주요청 이전에 입찰절차와 가격비교절차를 진행해야 하고, 절차 진행 및 낙찰자 선정의 근거를 문서화하여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입찰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.
- 1. 구매담당자가 단독으로 입찰서류를 접수하거나 유선으로 가격을 흥정하는 행위
- 2. 기 제출한 업체의 가격을 다른 업체에게 알려주는 행위
- 3.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에게 각기 다른 구매사양을 알려주는 행위
- 4. 낙찰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위
- 5. 기타 구매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

제13조 【구매계약의 체결】

- 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 [계약서 검토] 조항의 절차를 따른다.
- ② 구매계약은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체결을 완료해야 하며, 구매목적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변경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.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③ 소액 구매(예: 비품 등) 등 1항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매활동은 제28조 [예산협의] 조항 및 제29조 [예산집행] 조항에 따라 모회사의 예산관리부서에서 정한 대금지급 위임전결을 준용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제14조【검수와 대금지급요청】

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매대상에 대하여는 각 목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제29조 【예산집행】 조항에 따른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

- 1. 물품 구매
- 가. 납품장소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
- 나. 물품의 검수 및 검사에 따른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
- 다. 구매 발주 내용(계약서, 발주서 등), 납품명세서(거래명세서, 검수확인서 등)의 내용, (세금)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할 경우
- 2. 용역 구매
- 가. 용역의 내용이 발주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을 경우
- 나. 계약에 따른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했을 경우
- 다. 용역 완료 후 담당자(부서)의 검수가 완료된 경우
- 3. 설비 및 건설 구매
- 가. 진행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가 된 경우
- 나. 건설자산(건설중인 자산)에 대한 하자이행이 담보된 경우
- 다. 담당자(부서)의 검수가 완료된 경우
- ② 구매 과정에서 발주를 진행한 담당자가 검수 및 검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. 단, 부득이하게 발주를 진행한 임직원이 검수 및 검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다른 부서 임직원 또는 모회사의 사업부 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.
- ③ 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제2항에 따른 검수 및 검사가 완료되면 제29조 【예산집행】 조항에 따라 대금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.

제4장 재고자산

제15조【보관】

- ① 재고자산은 도난 및 분실에 대비하여 보관장소를 선정해야 하며, 해당장소는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- ② 자회사최고책임자는 재고자산을 관리할 '정(正)', '부(副)' 책임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.

제16조 【수불관리】

- ① 자회사의 재고자산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별도 양식으로 정한 문서에 기록하여 일 단위로 자회사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월 단위로 수불 내역을 집계하여 모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자회사최고책임자는 제1항의 수불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제17조 【재고자산 실사】

① 재고자산의 실물과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.

② 자회사의 자체적인 재고자산 실사는 자회사최고책임자의 주관으로 3개월에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해야 한다.

③ 모회사는 자회사의 재고상태 및 수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5장 고정자산

제18조 【자산관리와 취득】

- ① 고정자산은 회사의 미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,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의 장부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② 유형자산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실물에 부착하여 장부와 실물이 상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.
- ③ 고정자산의 취득 절차는 '제3장 구매'의 각 조항에 따른다.

제19조 【고정자산 실사】

- ① 고정자산의 실물과 장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.
- ② 자회사의 자체적인 고정자산 실사는 자회사최고책임자의 주관으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해야한다.
- ③ 모회사는 자회사의 고정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④ 고정자산 실사 시에는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자산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 재무팀과 협의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장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.

제20조 【매각 또는 폐기】

- ① 고정자산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거친 이후에 매각 또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.
- ② 매각 또는 폐기 과정에서 외부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제12조【입찰 및 비교견적 절차】조항을 준용한다.

제6장 인사

제21조 【채용】

- ① 자회사는 신규 임직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 모회사의 사업수행담당자와 그 필요성을 충분하게 혐의해야 한다.
- ② 채용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1. 채용공고 또는 채용의뢰
- 2. 서류접수 및 검토
- 3. 면접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4. 채용승인

③ 채용의 확정은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22조 [근로계약]

- ① 자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대상자와 업무수행 이전에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서화해야 한다.
- ②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득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논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23조 【급여 지급】

- ① 급여는 매월 특정일자에 1회 정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일자는 자회사의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.
- ② 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자회사의 운수원 중 운수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- ③ 자회사는 급여 지급 이전에 급여 변동 및 추가 지급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모회사 경영기획팀 및 피플부스터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.

제24조 【복리후생】

① 모회사는 자회사 임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정책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. ② 자회사최고책임자 및 모회사 사업수행최고책임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 복리후생 정책을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.

제25조【퇴직】

- ① 자회사는 퇴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. 단, 자회사의 운영 여건 상퇴직연금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재무팀 및 사업팀의 합의 후에 별도의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.
- ②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자회사 인사업무 담당자는 퇴직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취하고, 자회사최고책임자는 당사자와 면담하여 퇴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. 퇴직자 확정 및 퇴직 절차와 관련해서는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거쳐야 한다.

제26조 【징계】

- ①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, 자회사는 인사위원회(또는 징계위원회)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인사위원회(또는 징계위원회)의 구성원은 자회사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선정하되, 필요한 경우 모회사의 유관부서 임직원이 징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제7장 예산관리

제27조 [예산계획의 수립]

① 자회사의 예산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.

- 1. 모회사 예산관리부서는 자회사에 예산계획 수립 절차를 명문화 또는 별도 협의된 방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, 자회사는 모회사에서 정한 예산계획 수립 절차를 따라야 한다.
- 2. 모회사 예산관리부서는 자회사가 제출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모회사 재무부문장 및 사업부문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모회사 재무부문장 및 사업부문장은 이에 따라 자회사 예산계획을 허가 또는 반려할 수 있다.
- ② 자회사는 허가된 예산계획 내에서 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며, 허가된 예산계획 대비 예산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수정 계획을 제출하고 모회사 재무부문장 및 사업부문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.
- ③ 승인된 예산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초과할 경우, 모회사 예산관리부서는 자회사에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회사는 모회사 요청에 따라 사유를 파악하여 제출해야 한다.

제28조 [예산협의]

- ① 자회사는 '제3장 구매'에 따른 구매 또는 기타 계약 등에 따라 자회사 외부로의 대금 지급 등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모회사의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,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협의의 상세사항은 모회사의 예산관리부서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.
- ③ 자회사는 본 조에 따른 예산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1. 예산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절차 또는 계약 체결 등을 완료하여 법적 지불의무(세금계산서 발행 등)를 발생시키는 행위
- 2. 임직원의 금원으로 비용 지출을 완료한 이후 예산협의를 수행하는 행위
- 3. 예산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지급일을 확정하여 지급받을 자에게 통보하는 행위
- 4. 동일 건을 분할결제 하는 등 의도적으로 예산협의를 회피하는 행위
- 5.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예산협의 절차를 우회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

제29조 [예산집행]

- ① 예산의 사용·지급 절차는 모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지출결재 절차 및 지급위임전결규정을 따라야 하며, 지출결재 문서는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별도의 증빙문서를 첨부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증빙문서는 개별 품목의 단가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하고, 그렇지 못 할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재 문서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.
- ③ 지급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른 지출결재 문서의 각 결재권자는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결재를 할 수있으나, 그 내용을 해당 지출결재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.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제8장 자금관리

제30조 [자금관리주체]

자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는 모회사의 자금관리부서를 주관부서로 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자회사의 업무 목적 상 자금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 모회사의 재무부문 및 사업부문의 주관 사업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31조 【지급수단】

- ① 제29조 【예산집행】에 따라 대금 등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, 원화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, 외화의 경우 전신환(T/T)을 원칙적인 지급수단으로 하며, 계좌인출을 이용한 현금지급(예: ATM출금 등)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허용된 지급수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, 제29조【예산집행】 조항에 따른 지출결재 문서 작성 이전에 모회사의 자금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.

제32조 【자금운용】

- ① 자회사는 자회사최고책임자 및 모회사 자금관리부서에서 적시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인터넷뱅킹 또는 CMS(Cash Management System) 등을 이용하여 운용, 관리한다.
- ② 자회사는 자금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, 사전에 모회사 자금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.
- ③ 업무 상 불가피하게 현금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, 지체없이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 해야 한다.

제9장 법인카드

제33조 [발급과 폐기]

- ①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의 인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1. 자회사최고책임자
- 2. 자회사 경리 담당자
- 3. 자회사 영업 책임자
- ② 제1항 이외의 인원이 법인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거쳐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.
- ③ 법인카드의 한도 조정이나 폐기가 필요한 경우 '[별표 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제34조 [법인카드 사용]

- ① 자회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1. 자산성 비품을 구매하는 행위 (예: PC, 전자장비, 사무가구 등)
- 2. 미래의 사용을 위해 미리 결제를 해 놓는 행위 (예: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선결제 등)
- 3.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단일 사용 건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행위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oc. No: KM-SM-R01

Rev. No: 01

Rev. Date 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- 4. 상품권, 포인트 충전, 페이 충전 등 별도의 현금성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결제하는 행위
- 5.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결제하는 행위
- 6.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등의 목적으로 결제하는 행위 (예: 도박, 성매매 등)
- 7.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부적절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
- ② 자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모회사 재무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.

제35조 【부정사용 소명과 환수】

- ① 자회사의 임직원이 제34조 [법인카드 사용]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사용행위를 한 경우, 모회사는 사용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용자는 사용 내용을 소명하여야 한다.
- ② 제34조 【법인카드 사용】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진 경우, 자회사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지급 예정 급여에서 사용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.

제10장 법무

제36조 【계약서 검토 및 체결】

- ① 자회사 또는 사업수행책임자는 자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, 사전에 모회사 법무팀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. 단, 표준계약서를 내용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법무팀의 검토를 요하지 않는다.
- ② 전항에 따라 모회사 법무팀의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'[별표 1] 자회사업무수행 위임전결표'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 이 때, 법무검토를 마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기안하거나,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- ③ 계약체결을 위한 날인 절차는 별도의 인감관리규정을 따른다.
- ④ 계약서 검토 및/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,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
- ⑤ 자회사에서는 체결이 완료된 계약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관리하며, 원본 계약서는 자회사 내의 지정된 장소를 정하여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서함에 보관해야 한다.

제37조 【법률검토 요청】

자회사 또는 사업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모회사 법무팀에 법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1. 자회사 업무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
- 2. 자회사 관련 소송의 제소, 응소,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
- 3. 자회사 내/외부적으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(예 : 쟁의행위, 여론형성 등)
- 4.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, 이하 동일) 관련 서비스 또는 사업을 추진하거나, 제3자(개인 또는 단체불문)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- 5. 자회사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(상표, 특허 등) 출원/등록/관리 및 실시/허락 등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
- 6.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Rev. No: 01

Rev. Date: 2020.03.00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Dept : 시너지경영팀

Doc. No: KM-SM-R01

제38조 【법무 조사】

① 자회사최고책임자는 모회사에서 법령 준수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, 담당자 인터뷰 또는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조사를 지원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모회사의 지적사항,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, 필요시 모회사는 체크리스트 또는 지침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39조 [개인정보보호]

- ① 자회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 할 경우, 반드시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득해야 한다.
- ② 모든 문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(예: 주민등록번호 전체, 전화번호 등)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시 사전에 모회사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- ③ 자회사는 적절한 기술적,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.

제40조 【소송 등 보고의무】

- ① 자회사는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고소, 고발, 개인정보유출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모회사의 사업수행담당자와 법무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내용이 자회사에 재무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 재무팀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1조 【법무관리 주체】

- ① 자회사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는 자회사최고책임자의 책임으로 관리한다.
- ② 필요한 경우 자회사최고책임자는 모회사 법무팀에 법적 문제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모회사 법무팀은 그 요청을 검토하여 의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1장 정보보호

제42조 [정보보호 관리]

- ① 자회사는 규모 및 업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감독해야 하고,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시 자회사의 규모 및 업무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정보보호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. 자회사는 관리체계 수립 과정에서 모회사 정보보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43조 [정보보호 운영]

- ① 자회사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PC 및 서버 등 회사의 정보 자산이 보관되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.
- 1. PC 및 서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.(예: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,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등)
- 2. 설정한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.

■규정(Regulation) □지침(Guideline)

Rev. No: 01

Rev. Date: 2020.03.00 Dept : 시너지경영팀

Doc. No: KM-SM-R01

자회사 업무수행 운영규정

- 3.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.
- 4. 외부인이 사무실 등 업무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통제를 해야 한다.
- ② 자회사의 임직원은 본인의 PC를 이용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관 및 비밀번호 설정 등에 주의해야 한다.
- ③ 자회사는 침해사고 및 정보유출 예방을 위하여 보안 장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,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.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모회사 정보보호팀 또는 경영지원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12장 윤리경영

제44조 【부정청탁금지】

① 자회사의 임직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한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회사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,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 자회사의 임직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제1항의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청탁, 금품 및 접대,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제45조 [금품 등 수증재 금지]

- ① 자회사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여하한 금품 및 향응·접대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금품 및 향응·접대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자회사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, 금품의 경우 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은 자회사 임직원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제13장 규정의 위임

제46조 [규정의 위임]

- ① 본 규정의 각 장에서 정한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따른다.
-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승인, 합의, 참조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'별표 1'을 따른다.
- ③ 본 규정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따른다.
- ④ 자회사는 본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자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03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자회사 업무수행 위임전결표

업무내용		자회사	카카오모빌리티_사업부문		카카오모빌리티_재무부문,직속부문		비고	발생주기		
구분	수행업무	관련조항	자회사최고 책임자	사업수행담당자 (사업부문 파트장)	사업수행책임자 (사업부문 팀장)	사업수행최고책임자 (사업부문장)	업무담당자 (부문 담당자)	업무팀장 (부문 팀장)		
총칙	규정 및 지침의 작성, 수정, 삭제	제 4 조【규정체계와 관리】				승인		승인(합의)	규정책임부서장: 승인 규정관리부서장: 합의 KM 대표이사: 승인	발생시
회계	계정과목의 생성, 수정, 삭제	제 6 조 【계정과목】	승인					합의	재무팀: 합의	발생시
	증빙문서의 폐기	제 7 조 【증빙관리】	승인	합의			합의			연
	결산보고	제 8 조 【결산】	승인					합의	재무팀: 합의	월
	결산마감 이후 수정	제 8 조 【결산】	승인					합의	재무팀: 합의	발생시
구매	입찰 및 낙찰자 선정	제 12 조 【입찰 및 비교견적 절차】	승인	합의					경영지원팀: 참조	발생시
재고자산	재고수불부 점검	제 16 조【수불관리】	승인	합의			참조		재무팀: 참조 경영지원팀: 참조	월
	재고실사 결과보고	제 17 조 【재고자산 실사】	승인		합의		합의		재무팀: 합의 경영지원팀: 합의	분기
고정자산	고정자산실사 결과보고	제 19 조【고정자산 실사】	승인		합의		합의		재무팀: 합의 경영지원팀: 합의	년

업무내용			자회사	카카오모빌리티_사업부문			카카오모빌리티_	재 무부 문,직속부문	비고	발생주기
구분	수행업무	관련조항	자회사최고 책임자	사업수행담당자 (사업부문 파트장)	사업수행책임자 (사업부문 팀장)	사업수행최고책임자 (사업부문장)	업무담당자 (부문 담당자)	업무팀장 (부문 팀장)		
	고정자산 폐기 및 매각의 결정	제 20 조 【매각 또는 폐기】	승인		합의		합의(참조)		재무팀: 합의 경영지원팀: 참조	발생시
인사	채용의 계획	제 21 조 【채용】	승인		합의		합의		경영기획팀: 합의	발생시
	채용자 확정 (운수원)	제 21 조 【채용】	승인	합의						발생시
	채용자 확정 (비운수원)	제 21 조 【채용】	승인		합의			합의(참조)	피플부스터팀: 합의 경영기획팀: 참조 재무팀: 참조	발생시
	근로조건의 변경	제 22 조 [근로계약]	승인		합의			합의	피플부스터팀: 합의 경영기획팀: 합의 재무팀: 합의	발생시
	퇴직연금제도 이외의 퇴직제도 운영 및 적용	제 25 조 【퇴직】	승인		합의			합의	재무팀: 합의	발생시
	퇴직처리 확정(운수원)	제 25 조 【퇴직】	승인	합의						발생시
	퇴직처리 확정(비운수원)	제 25 조 【퇴직】	승인		합의			합의	피플부스터팀: 합의	발생시
	징계의 결정	제 26 조 【징계】	징계위 결의					합의	징계위원회 결의 피플부스터팀: 합의	발생시
예산관리	예산집행(지출결의 등)	제 29 조 【예산집행】							※ 별도 지급위임전결규정 참조	발생시

업무내용			자회사	카카오모빌리티_사업부문			카카오모빌리티_	재 무부 문,직속부문	비고	발생주기
구분	수행업무	관련조항	자회사최고 책임자	사업수행담당자 (사업부문 파트장)	사업수행책임자 (사업부문 팀장)	사업수행최고책임자 (사업부문장)	업무담당자 (부문 담당자)	업무팀장 (부문 팀장)		
법인카드	법인카드 발급/폐기/한도변경	제 33 조 【발급과 폐기】	승인	합의				합의	자금팀: 합의	발생시
	특정업종의 사용불가 해제	제 34 조 【법인카드사용】	승인			합의		합의	자금팀: 합의	발생시
	부정사용의 소명	제 35 조 【부정사용 소명과 환수】	승인					합의	자금팀: 합의 시너지경영팀: 합의	발생시
법무	1 억원 이하 계약체결(변경계약 포함)	제 36 조 【계약서 검토】	승인		합의		합의		재무팀 : 합의 법무팀: 합의	발생시
	1 억원 초과 계약 체결(변경계약 포함)	제 36 조 【계약서 검토】	이사회 승인			합의		합의	재무팀: 합의 법무팀: 합의	발생시
	소송 등의 보고	제 40 조 【소송 등 보고의무】	승인			합의		합의(참조)	법무팀: 합의 재무팀: 참조	발생시
	개인정보 활용 보고	제 39 조 【개인정보보호】	승인		합의			합의	법무팀: 합의	발생시

끝.